

춘천지방법원 2021. 8. 17 선고 2019가단5510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

대한민국

피 고

1. AAA

2. BBB

3. CCC

변 론 종 결

2021. 6. 29.

판 결 선 고

2021. 8. 17

주 문

1. 가. 피고 AAA과 DDD 사이에 별지 1.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부터 3, 7부터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
나. 피고 BBB과 DDD 사이에 별지 2.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
다. 피고 CCC와 DDD 사이에 별지 3.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

각 2017. 12. 31. 체결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.

2. DDD에게,

가. 피고 AAA은 별지 1.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부터 3, 7부터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

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와 2018. 1. 29. 접수 제5646호로

마친,

나. 피고 BBB은 별지 2.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와 2018. 1. 29.

접수 제5647호로 마친,

다. 피고 CCC는 별지 3.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와 2018. 1. 29.

접수 제5648호로 마친

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aa 주식회사(이하 ‘aa’이라 한다)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자 발행주식의

100%를 보유하고 있던 DDD은 2017. 5. 26. EEE에게 보유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(이하 ‘이 사건 주식양도’라 한다), 같은 날 aa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.

나. DDD은 2017. 12. 31. 배우자인 피고 AAA과 별지 1.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 자녀인

피고 BBB와 별지 2.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 자녀인 피고 CCC와 별지 3.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증여계약(이하 '이 사건 각 증여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다. 피고 AAA은 2018. 1. 29. 별지 1.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 피고 BBB은 같은 날 별지 2.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 피고 CCC는 같은 날 별지 3.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(원고가 2020. 7. 27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를 취하한 별지 1.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4부터 6 기재 각 부동산을 제외한 별지 1.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부터 3, 7부터 9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2.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3.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하고,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하 '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

라. 원고 산하 영등포세무서장은 2017. 11. 21.부터 2018. 1. 15.까지 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, 그 과정에서 aa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, 2015. 7. 1.부터 2016. 12. 31.까지의 법인세, 부가가치세 등 총 4건 합계 570,892,710원을 부과, 고지하였다.

마. 영등포세무서장은 aa이 보유한 재산이 없어 aa에 대한 체납처분으로는 국세충당이 불가능하다고 보고, aa의 과점주주인 DDD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, 원천세, 부가가치세 등 모두 6건의 체납세금에 대해 DDD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는데, DDD이 EEE에게 aa의 주식을 전부 양도한 2017. 5. 26.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원천세 1건을 제외한 나머지 5건의 체납세금(이하 '이 사건 조세채권'이라 한다)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.

순번

세목

귀속

납세의무성립일(주된 납세자)

납부기한(주된 납세자)

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

제2차 납부고지송달일

체납액(원)

1

법인세

2016년

2016.12.31.

2017.6.1.

2017.6.1.

2018.9.11.

x,xxx,xxx

2

법인세

2016년

2016.12.31.

2018.3.31.

2018.4.1.

2018.9.21.

xx,xxx,xxx

3

부가가치세

2015년 2기

2015.12.31.

2018.3.31.

2018.4.1.

2018.9.27.

xxx,xxx,xxx

4

부가가치세

2016년 2기

2016.6.30.

2018.3.31.

2018.4.1.

2018.9.27.

xxx,xxx,xxx

5

부가가치세

2016년 2기

2016.12.31.

2018.3.31.

2018.4.1.

2018.9.27.

xxx,xxx,xxx